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887 제출연월일: 2024. 10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관광진흥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「의료법」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)	제42조(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)
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「관광진흥법」 제12조의2제
	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
	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
	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
	충족하는 자는 「의료법」 제56
	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
	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
	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
	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.